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969
----------	-------

발의연월일 : 2023. 6. 29.

발의자 : 남인순 · 김승남 · 김성환  
김영배 · 서영석 · 최혜영  
장은미 · 우원식 · 인재근  
진선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저출생·고령화의 도래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다른 기관과 통폐합되고 있으며, 강제 폐원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설립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하며,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및 제9조제3항  
신설 등).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설립 · 운영할 수 있다”를 “설립 ·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 · 도지사가 시 · 도 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설립”을 “설립 · 통합 · 해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설립”을 “설립 · 통합 · 해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설립”을 “설립 · 통합 · 해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설립”을 각각 “설립 · 통합 · 해산”으로 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 · 도 서비스원을 통합 · 해산하려는 경우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시 · 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사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

2.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
3. 그 밖에 시·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u>설립·운영 할 수 있다.</u></p> <p>② ~ ④ (생략)</p> <p><u>&lt;신 설&gt;</u></p>	<p>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u>설립·운영 하여야 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시·도지사가 시·도 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9조(시·도 서비스원 설립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시·도지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서비스원을 <u>설립하려는 경우</u>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p>	<p>제9조(시·도 서비스원 <u>설립·통합·해산</u>의 타당성 검토 등)</p> <p>① ----- -----<u>설립·통합·해산</u>----- ----- -----</p>

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출자·  
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 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신 설>

-----  
-----  
-----  
-----.

② -----  
-----설립·통합·해산-----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하려는 경우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시·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사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

2.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

3. 그 밖에 시·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u>위하여 필요한 조치</u>	
<p>③ 제1항에 따른 시·도 서비 스원의 <u>설립</u> 타당성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u>설립</u> 협의의 절 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 -----<u>설립·통합·해산</u>----- -----<u>설립·통합·해산</u>----- -----.</p>